

의안번호	제758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8
----------	-----

제출연월일 : 2024. 10. 2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 1) 지방공무원 총수: 3,480명 → 3,558명 (+78명)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3,136명 → 3,152명 (+16명)
-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335명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397명 (+62명)

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별표3)

- 1) 총계: 3,480명 → 3,558명 (+78명)
- 2) 일반직 계: 3,125명 → 3,141명 (+16명)
 - 5급 이하 소계: 3,085명 → 3,101명 (+16명)
- 3) 교육전문직원 계: 335명 → 397명 (+62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명 → 359명 (+6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첨

다. 합 의: 관련부서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24. 10. 11. ~ 2024. 10. 21.(10일간)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
- 5)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80명”을 “3,5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36명”을 “3,15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
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로,
“335명”을 “39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558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41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101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97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9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 수요 반영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78명(일반직 16명, 교육전문직원 62명)에 대한 인건비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5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산출기초	연도별 인건비 추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가. 일반직(25.단가 79,177천원×16명)	1,055,693	1,304,837	1,343,982	1,384,302	5,088,814
나. 교육전문직원(25.단가 125,354천원×62명)	6,476,623	8,005,106	8,245,260	8,492,617	31,219,607

※ 2025년 비용추계 기간: 2025년 3월 ~ 12월

※ 연도별 2025년 치우개선을 적용(3%)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장 박영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보통교부금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세 출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정규직인건비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재원 조달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의존 재원	소계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